

# 2023년도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20.(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39)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준근 주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53건(안건번호 제2023-67094호~6804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67094호~67097호는 ☁☁☁ 블로그에 음악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사안으로 감상평,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67098호~67106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67107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67108호~67121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67122호~67130호는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8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3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김민아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한승원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준근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김준근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18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67094호~6709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음악 불법복제물과 게시자의 생각, 후기 등이 같이 게시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음악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해야함.
- A 위원: 위원회는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 김준근 주임: 모니터링 안전인 경우에는 대부분 삭제·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일부 안전의 경우 별도 안전으로 전체위에 올려서 심의를 한 사례가 있음.
- A 위원: 전체위에서는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권리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시 게시자가 작성한 글까지 삭제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 당시 그런 주장을 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 다시 의사 결정을 할 필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단순 위법으로도 볼 수도 있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한승원 위원님께서 어떤 의견 이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이런것까지 하게 된다면, 전면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마치 캐롤이 없어지는 것같은 과도한 조치임. 게시자가 이런 건을 여러개 올렸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경험에 관련된 아주 소소한 부분의 일부를 쓰는 것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조치를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한승원 위원님은 검토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존중해서 경고의 시정권고정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있는 블로그에 다른 게시물들에도 음악이 같이 게시되어 있는가?
- 김준근 주임: 블로그마다 운영 목적이 다르지만, 심의대상 게시물 이외에 음악 게시를 목적으로 게시된 게시물은 확인 되지 않음.
- A 위원: 사실 음악 전체를 가져다 쓰는 것은 허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왜냐하면 게시자들도 합법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임. 그래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경고의 시정권고 혹은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권고 둘 중 하나로 조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이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재 상황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다시 전체위원회에 논의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정리하고자 함. 이러한 유형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함. 현실적으로 '누구는 삭제가 되고 누구는 경고 메시지만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거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음.
-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2023-67094호~67097호는 감상평,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670

98호~6710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ㅎㅎㅎ 블로그에서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막은 위원회에서 부결 혹은 가결한 사례가 여러번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 영상들은 모두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 중인가?
- 김준근 주임: 안전번호 제2023-67103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서 자막을 포함하여 정식 서비스를 하고 있음.
- A 위원: 기존에 부결했던 상황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저작물로 오히려 시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건은 역주행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권리자들에게 더 효과가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억하고 있음. 그 당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노력도 지난번에 부결할 때 관심 있게 본 부분임.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보면 웹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호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고있는 상황임. 그래서 저는 검토 의견중에 사실 우리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 예를 들어 스트리밍 기기 같은 것들은, 그 자체를 불법 복제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정보를 연결하고 그리고 용이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보로 보아서 우리 법으로 포섭하는 경향이 있음. 그런 관점에서 자막만 있는 게시물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논리를 보강하여 검토보고서에 기술할 필요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67098호~6710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67098호~6710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6710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67107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6710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67108호~6712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67108호~67121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67108호~67121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김준근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67122호~67130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67122호~67130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67122호~67130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준근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

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67131호~6804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출판/어문, 만화/웹툰, 게임, SW,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종이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67160호(‘종이달’)는 2023.04.10. 공개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900포인트에 판매중임.

(‘귀멸의 칼날: 도공 마을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67203호(‘귀멸의 칼날: 도공 마을편’)는 2023.04.09. ~ 2023.06.18. 방영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180포인트에 판매중임.

(‘피의 게임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67274호(‘피의 게임2’)는 2023.04.28. 공개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으로 웹하드에서 520포인트에 판매중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67131호~6804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67131호~6804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67094호~67097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67098호~67106호, 제2023-67107호, 제2023-67108호~67121호, 제2023-67122호~67130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67131호~6804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6. 27.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한승원